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27호 2024. 1. 29.(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36호(재산등록사항 공개)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49호(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5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6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6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65호(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20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36호
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1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위	센터장	성명	정진명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7,285		
본인	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626-1번지 407.00㎡		7,285 (7,285)		
▶ 건물(소계)				150,000		
본인	단독주택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대지 330.00㎡ 건물 99.22㎡		150,000 (15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00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그랜저(GRANDEUR) 배기량(2,999cc)		8,000 (8,000)		
▶ 예금(소계)				26,720		
본인		교보생명보험 7,543, 농협중앙회 451, 삼성화재해상보험 10,226, 신한은행 8,500		26,720		
▶ 채무(소계)				41,457		
본인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40,000, 신한은행 1,457		41,457		
총 계				150,548		

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 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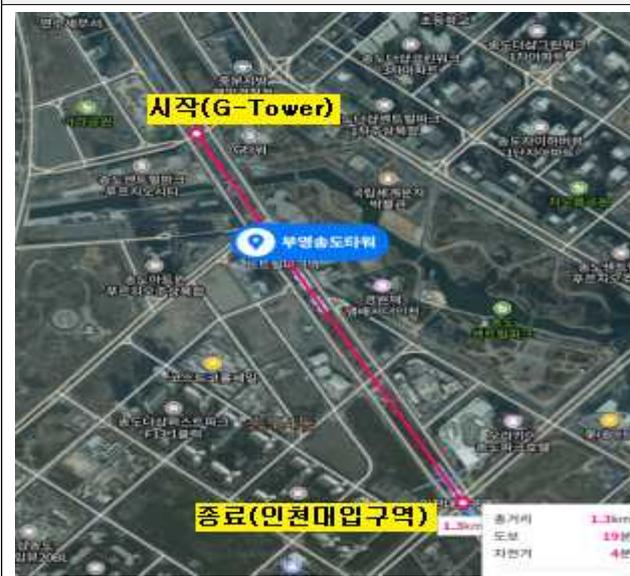
2024. 1.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의견제출 기간 : 2024. 1. 23. ~ 2024. 2. 6. (14일간)
2. 명예도로명 부여(안) ※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추가로 부여되는 상징적인 도로명

예비도로명	1. 재외동포청로	2. 한민족하나로
	3. 한민족화합의길	4. 재외동포번영의길
부여사유 :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재외동포 권익신장과 전세계 한민족 공동체 구축 실현을 기원		
부여구간	- 시작지점 : 인천타워대로 286 - 종료지점 : 인천타워대로 218	
연장 / 폭	1.3km / 70m	

부여구간 위치도 (재외동포청 위치 : 부영송도타워)



3. 의견제출방법

-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하단의 의견서를 서면(우편) 및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 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
- 전 화 : 032-749-7602(도로명주소팀), 032-749-7544(Fax)
- E-mail : seonju88@korea.kr

4. 명예도로명 부여 절차



명예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서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 명예도로명 부여의 건)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명예도로명	부여(안)			
	부여사유			
제출의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24.1.8.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별 분장 사무의 전결 사항을 정비하고, 사무의 신설·누락·폐지 등으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전결 사항을 수정하여 업무 추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서별 전결 사항 수정

소 관 부 서	주 요 내 용
송 도 정 책 과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사실확인 및 의견조회(추가) ▶ 공동주택 민원 회신(질의, 국민신문고 등)(추가)
송 도시 설 관 리 과	▶ 송도국제도시 소음 및 진동 관련 업무(추가)
홍 보 소 통 실	▶ 미디어아트 전시 운영(추가) ▶ 연수드림캔버스 시설장비 관리(추가)
기 획 예 산 과	▶ 국내외 교류사업(삭제)
경 제 산 업 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추가) ▶ 동물복지 시행계획(추가)
위 생 정 책 과	▶ 음식특화거리에 관한 사항(추가) ▶ 브랜드식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추가) ▶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동체공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삭제)
재 무 회 계 과	▶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추가) ▶ 구청사에 관한 업무(구유건물과 부대시설 영선관리, 구·동청사 신축업무 등)(추가)
세 무 1 과 & 세 무 2 과	▶ 직권고지에 대한 징수 결의(수정) ▶ 부과취소·감액·과오납환부 등 결정결의(수정)
노 인 장 애 인 과	▶ 50플러스 지원사업(삭제) ▶ 인생이모작지원 센터 운영(삭제)
여 성 아 동 과	▶ 청소년업무(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행사 등) (삭제)
교 통 행 정 과	▶ 기계식주차장 업무(추가)
차 량 민 원 과	▶ 기계식주차장 업무(삭제)
건 설 과	▶ 자전거업무(위원회, 수리센터, 교육 등)(삭제)
건 축 과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처리(수정)
도 시 계 획 과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관리(수정) ▶ 옥외광고물(고정, 유동)의 신고 및 연장 처리(수정)
청 소 행 정 과	▶ 순환경제기본계획수립(수정) ▶ 공공용봉투 지급(수정)
총 무 과	▶ 국내외 교류사업(추가) ▶ 민방위업무(민방위시설장비, 인력동원, 비상사태 등) (추가) ▶ 구청사에 관한 업무(구유건물과 부대시설 영선관리, 구·동청사 신축업무 등)(삭제) ▶ 통신업무(행정통신시설, 정보통신공사,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삭제)
자 치 행 정 과	▶ 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추가)
안 전 관 리 과	▶ 통신업무(행정통신시설, 정보통신공사,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추가) ▶ 민방위업무(민방위시설장비, 인력동원, 비상사태 등) (삭제)
문 화 관 광 과	▶ 체육업무(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직장경기부, 유소년스포츠단 등)(삭제)
체 육 청 소 년 과	▶ 체육업무(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직장경기부, 유소년스포츠단 등)(추가) ▶ 자전거업무(위원회, 수리센터, 교육 등)(추가) ▶ 청소년업무(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행사 등)(추가)
교 육 지 원 과	▶ 50플러스 지원사업(추가) ▶ 인생이모작지원 센터 운영(추가) ▶ 연수구북카페운영(삭제)
건 강 증 진 과	▶ 통합건강증진사업(추가) ▶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추가) ▶ 치매업무(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등)(삭제)
감 염 병 관 리 과	▶ 로타바이러스 위탁예방접종(삭제)
치 매 정 신 건 강 과	▶ 치매업무(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등)(추가)
송 도 건 강 생 활 지 원 센 터	▶ 한의약건강증진사업(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과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ryang80@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도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개정 이유

- 공무원 퇴사 및 정년퇴직에 의한 공무원 근로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정원을 개정하여 정원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표] 공무원 근로자의 정수표 수정

- ① 여성아동과 (▲1)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퇴사(2023.1.31.)에 따른 1명 정원 감원

- ② 보건소(▲1)

- 보건행정정보조원 정년퇴직(2023.12.31.)에 따른 1명 정원 감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과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 mail : ryang80@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 근로자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총괄

구분	총계	행정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공무직	130	25	7	6	73	19

2. 부서별·직종별 현황

부서별	계	행정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소계	민행보조원	원정원	지사	출발부	주정상단	차단원	통합관리	의사관리	의료급여	보상담당	육신원	자치직상담	립인업사	GIS입력	DB원	사보	서조	도시운	서스	보행정보				건설원	소계	시설물·장비유지관리	장비관리	현장감시	작업인부	현장인부	지단
총계	130	25	2	1	2	9	2	1	1	1	1	1	1	1	1	1	2	3	7	1	1	1	2	2	6	73	19						
본청	123	19	2	1	2	9	2	1	1	1	0	0	0	6	1	1	1	1	2	2	6	73	19										
홍보소통실	3													3									1	2									
재무회계과	1	1		1																													
토지정보과	1	1								1																							
복지정책과	5	5				5																											
사회보장과	3	3					2		1																								
여성아동과	4	4				4																											
출산보육과	1	1						1																									
차량민원과	3	3	1		2																												
건설과	7													1			1							6									
청소행정과	73																								73								
환경보건과	1													1			1																
공원녹지과	1													1	1																		
총무과	19																										19						
민원여권과	1	1	1																														
직속기관	4	3												1									1										
보건소	4	3												1									1										
사업소	3	3														1	2																
연수청학도서관	3	3														1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6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정이유

공무상 출장 수행 시 직원의 업무수행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업무용 택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업무용 택시 이용 목적
- 업무용 택시 이용원칙 및 이용절차
-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정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총무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749-7168, FAX : 749-7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상 출장 수행 시 직원의 신속한 업무수행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운영하는 업무용 택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용 택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이 공무상 필요한 출장 수행 시 이용하는 택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형택시를 말한다.
2. “운송 플랫폼 앱”이란 이용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무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고 업무용 택시 총괄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의 플랫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총무과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직원으로서 여비 지급대상 중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 자를 말한다.
5. “근무시간”이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말한다.
6. “근무지 내”란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출장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 소속 직원에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구 청장이 정한다.

제4조(이용원칙) ① 업무용 택시는 공무상 출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내 이동 시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택시는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결제시간이 평일 09:00부터 19:00까지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용 택시 이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때는 출장 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5조(이용절차) ① 회원가입을 위해 각 부서 담당자는 총괄부서의 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각 부서 담당자는 운송 플랫폼 앱에 직원 등록을 해야 하며, 이용자는 운송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한다.

③ 이용자는 출장 후 이용내역을 별지 서식의 업무용 택시 이용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용 택시 제도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용 택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용 택시 이용 현황을 관리·점검해야 한다.

제7조(여비)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르며,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이용요금의 정산)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월의 이용요금을 다음 달 23

일까지 정산하여 업무용 택시 결제 전용 계좌로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 정산 관리자는 업무용 택시 총괄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③ 각 부서의 담당자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업무용 택시 이용관리대장을 총괄 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요금의 자기부담) 각 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자기부담으로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의 소속 부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용 택시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손실보상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삼성물산에서 시행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4차)구역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3. 12. 15. 손실보상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재결서 정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 업 명: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4차)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삼성물산주식회사
4. 재결서 정보 수령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6.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미거주
7.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4. 1. 29. ~ 2. 13. (14일 이상)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이*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인선길112번길 11(옥련동)	
2	원*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인선길112번길 11(옥련동)	